
1. 1 1
[2
, ()가 가
, " "] 5

2. 1
1 . , .
가. 가

. <1998.12.31>

.
. .
. .
. .

3. . (가
)
<1998.12.31>

9 () 9 2
. < 1999.8.6, 2007.12.28, 2008.2.29 >
[1999.8.6]

10 ()
3 24 3 .
(" ") . < 2005.6.30,
2007.12.28, 2008.2.29 >

1. 9 1
2. 9 4
3. 9 2 2
4. 17 . .
- 4 2. 20 2 2
5. 81 83
6. 101

[2003.8.21]

11 () 9 1
 . < 1999.8.6, 2007.12.28, 2008.2.29 >
 [1999.8.6]

12 () 9 1
 . < 2007.12.28, 2008.2.29 >
 <2007.12.28 >
 <2008.6.5 >
 [1999.8.6]

12 2() 9 4 " "
 가 3 (13 1 1 2
 가 1) .
 9 4 1
 30
 . < 2007.12.28, 2008.2.29 >
 가 2
 () 가 . <
 2007.12.28, 2008.2.29 >
 9 .
 [2002.9.18]

12 3() 9 2 2 "
 " 1 . , 17 1 4
 . < 2010.5.27 >

- 1.
 - 2.
 - 3.
 4. ()
 5. 가
- [2002.9.18]

13 () 10 . < 1999.8.6,
 2001.8.25, 2002.9.18, 2005.5.7, 2005.11.25, 2007.12.28, 2008.2.29 >

1. 2 . (가 .
) .

1 2. (" ")
가 [1 56 1
1 ()]
, 가 ,
가
가. 가 . 가 ,
가 1 100 20 100 50

. <2007.12.28>

. 가 1
가

2. <2008.6.5>

3. 가 가

4. 83 1 · 3 · 5 · 7 9
1 6

5.

6. <2003.8.21>

1 3

.< 1999.8.6, 2005.5.7, 2007.12.28, 2008.2.29>

1. 2 가 「 」
1 .

2. , ()
가 2

3. 「 」 614
[1999.8.6]

14 <1999.8.6>

15 <2007.12.28>

16 () 가 가
2 .

1. : 2 () 2 1 1
 2 1
 2. : 2 .
 1
 , 가 가 (2 3) ()
 2 3) 가
 .
 1 .

[[2009.11.10](#)]

17 () . 「 」 11 3
 . < [1999.8.6, 2000.5.1, 2005.5.7](#) >

[[1999.8.6, 2000.5.1](#)]

18 ()
 . < [1999.8.6, 2008.2.29](#) >

19 <[1999.8.6](#)>

20 <[1999.8.6](#)>

21 () 16 4
 . < [1999.8.6, 2005.6.30, 2007.12.28](#) >

1.
 2. 2 가 3 ,
 2 1
 3. 1 가
 가

<[1999.8.6](#)>

22 <[1999.8.6](#)>

23 <[1999.8.6](#)>

24 <[1999.8.6](#)>

3

25 () 22 2

. < [2005.5.7, 2007.12.28, 2008.12.31](#) >

1.

2.

3.

4.

5.

6. 가

7. 34 2 ()

8. 35 1

9. 「 」 30

10. 87 1 가
가

11. 「 」, 「 」

12.

13.

14.

15.

16.

17.

18. 「 」 7 2

가

(「 」

가

)

. < [2003.8.21,](#)

[2005.5.7, 2007.12.28, 2008.2.29](#) >

26 ()

1

22

4

30 . < [2007.12.28](#) >

1

4

30

.< 2007.12.28>

1 2

30

.<

2007.12.28>

[2002.9.18]

26 2()

22 5

(" ")

(. 3)

.< 2008.2.29,

2010.5.27>

(.)

가

가

가

, 「

」

「

」

「

」

가

.< 2010.5.27>

[2007.12.28]

26 3(.)

24 3

.<

2008.2.29>

1. .

2.

3.

4.

5. .

.< 2008.2.29>

[2005.6.30]

27 ()

24 4

15

< 2005.6.30, 2008.2.29>

1.

2.

- 3.
- 4.
- 5.

[[2002.9.18](#)]

28 <[1999.8.6](#)>

29 () 27 " " .

- 1. 30 : 20
- 2. 10 : 15
- 3. 1 : 10
- 4. 1 : 5

30 () 28 1 4 .

30 2() 28 2 1 " "

30
 28 2 1 " " 100 30 .
 28 2 1 " " 가

28 2 2
 30 . , 28 2 1 가

.< [2007.12.28](#),

[2008.2.29](#)>

- 1. 1 4
- 2. 30
 가 가 4

[[2005.6.30](#)]

31 () 29 1 (가

) 21 1

29 1 " 가

. " 가 . .
 . , . .

.< 2005.6.30, 2008.2.29>

29 1 2 2

.< 1999.8.6, 2007.12.28>

1.

2.

(" . ")

가 . .
48

32 () 29 5

30 .

.< 1999.8.6, 2008.2.29, 2008.6.5>

가 가 1

.< 1999.8.6>

<1999.8.6>

[1999.8.6]

33 <2005.6.30>

34 () 31 1 " " 가

가 .

가 31 2

32

가 30

31 1 ,

.< 2008.2.29>

[2005.6.30]

34 2() 31 2 1 " "

1. 「 」 5

2. 「 」

31 2 1 " "

1. 「 가 」 42 4 (「 」 39

3)

2. 「 42 1 1 (「 」 64
2 4 76 2)
31 2

.< [2008.2.29, 2010.7.26](#)>

1. 「 가 「 14 6 (「
」 39 3) 「
」 15 6 (「 」 64 2 4 76 2
)
]

2. 1

31 2

「 가
」 69 (「 」 39 3)
「 」 78 (「 」 64 2 4)
76 2

.< [2008.2.29, 2008.6.5](#)>

1.

2.

3. 2 가 (가)

가

3 4

[[2007.12.28](#)]

[34 2 34 3 <[2007.12.28](#)>]

34 3() <[2010.5.27](#)>

34 3

.< [2007.12.28,](#)

[2008.2.29](#)>

34 3

.< [2007.12.28](#)>

3

34 3

가

.< [2007.12.28](#)>

[2005.6.30]

[34 2 , 34 3 34 4 <2007.12.28>]

34 4() 35 1 3 46 2 " "

1. 「 」 5

2. 「 」

3. 「 」

4. 「 」 , , 100

[2010.5.27]

[34 4 34 5 <2010.5.27>]

34 5() <2010.5.27>

36 2 가

15

2

.<

2008.12.31 >

[2005.6.30]

[34 4 <2010.5.27>]

34 6() 38 2

1. 22

2. 28

가·

3. 36 1

[2010.5.27]

4

35 () 40 1

. < 2002.9.18 >

40 1

5

1 3 .< 1998.12.31,

2008.12.31>

1. 5 1

가. ()·

. ()· 가

2.

<1998.12.31>

40 1

.<

2008.2.29>

36 () 41 1 4 "

가

.< 2001.7.7, 2005.5.7,

2005.11.25, 2007.12.28>

1. 「 · 」, 「 」 「 」

1 2. 「 」

1 3. 「 」

1 4. 「 」

1 5. 「 」

2. 「 · 」

3. 「 」

4. 「 」

5. 「 」 (·)

6. 「 」 ·

[2000.4.18]

37 () 41 1 "

"

.< 2003.11.29, 2005.5.7,

2005.11.25, 2007.12.28, 2008.10.29>

1. · · · · ·

2.

3. 「 」 9 가 13 1

· 16 「

」 11 가

[[2000.4.18](#)]

38 () 41 2 1 " " 「
· 」 1 (9),

41 2 2 " " 「 」 2
. < [2008.5.26](#) >

1. (「 」 9)

2. (10)

3. (10)

41 2 3 " " 「 」 2

1. (1)

2. 가 1

41 2 4 " " 「 」 2

[[2007.12.28](#)]

5

39 () 47 1 " 가
가 . < [2007.12.28](#) >

47 2 23

1 100 3

. < [2007.12.28, 2008.2.29](#) >

2 가 1

. < [2007.12.28](#) >

. < [1999.8.6,](#)

[2007.12.28, 2008.2.29, 2008.12.31](#) >

40 () 48 1

. < [1999.8.6, 2008.2.29, 2010.5.27](#) >

1.

2.

3. 가

41 () 48 2

. < [2007.12.28, 2008.2.29](#) >

48 2

. < [2007.12.28](#) >
48 2 1 ,
1 .

42 () 48 2

. < [2007.12.28](#) >

48 2

. < [2007.12.28](#) >

43 () 48 2
가 25 1

. < [2007.12.28](#) >

44 () 48 2
42

. < [2007.12.28](#) >

6

45 () (86 1
) 49 1

. < [2007.12.28, 2008.2.29](#) >

49 1

. < [2008.2.29](#) >

[2005.6.30]

46 () 50 1 (" ")

[1999.8.6]

47 () 50 5 . <

1999.8.6 >

1.

2.

3.

4.

5.

6.

7.

8.

9.

10.

48 ()

. < 1999.8.6, 2008.2.29 >

49 () 51 1 " "

10 1 . < 1999.8.6 >

7

50 () 54 5 (" ")

. < 1999.8.6 >

1.

2.

3.

4. 1

5. 가 .

6.

7.

- 8.
- 9.
- 10.
- 11.
- 12.
- 13.
- 14.

51 () . < [1999.8.6](#) >

2 1

. < [1999.8.6, 2002.9.18, 2003.8.21, 2007.12.28, 2008.2.29](#) >

1. 가 7 9

2. 1

3. 1

4. 가

5.

6. 가

8 10 . 2 .

가.

.

.

.

2

2 1 6 3 ,

. < [1998.12.31, 1999.8.6](#) >

1 2 ,

. < [1999.8.6](#) >

- 1.
- 2.
- 3.
- 4.
- 5.

52 () 51 2 1 6

. < [1999.8.6, 2005.5.7, 2007.12.28](#) >

1.

2.

3.

5

4.

5. 「 가

」

5

51

2

1

6

1

1

.< [1999.8.6](#)>

53 (

)

55

1

"

"

3 1

.< [1999.8.6](#)>

54 ()

가

.< [1999.8.6](#)>

1.

2.

3.

4.

5. 가

6.

7. 1

8.

9.

10.

(

)

11.

12.

13.

(" ")

3

.< [1999.8.6, 2007.12.28](#)>

1.

2.

1

1

·

2

·

4

10

13

3.

3

.<

[1998.12.31, 1999.8.6](#)>

1.

,

1

2.

, 2 2

3.

1 () 3

, 1 6

3

3

.< 1999.8.6>

55 ()

.<

1999.8.6>

1

.< 1999.8.6>

56 () 54 5

.< 1997.12.31,

1999.8.6, 2005.5.7>

1. 2 1

2. 「 」

3. 「 」

4. 「 」

5. 「 」

6. 「 」

56 1 1

.< 2007.12.28>

1. : 가 가

2. :

3. :

4. : 3

5. :

6. :

7. : 1 6

56 1 1 " "

1. • 가

2.

3.

4.

5.

6. 가

가 .

< 1999.8.6 >

56 2() 56 2 2 " "

. < 2008.7.29 >

1. 「 」

2. 「 • 」 .

3. 「 」

4. 「 」

[2007.12.28]

57 () 54 5

35 , .

. <

1999.8.6, 2005.11.25, 2010.5.27 >

1

. , 「 가 」 가

가 . < 2005.5.7 >

(56 2)

(56 2) 가 . <

1999.8.6, 2005.11.25 >

.< 1999.8.6, 2008.2.29 >

58 ()

「 」

가

.<

1998.12.31, 1999.8.6, 2005.5.7, 2009.10.1 >

1

.<

1999.8.6 >

59 () 59 1

가

.<

1999.8.6 >

60 1 2 5

.< 1999.8.6, 2002.9.18 >

60 () 63 1

.<

1999.8.6 >

63 1

.< 1999.8.6 >

1

, 2

.< 1999.8.6 >

61 () 67 1

100 5

.< 1999.8.6 >

62 () (56 2)

.< 1999.8.6, 2005.11.25 >

1

.< 2008.2.29 >

63 () 64 1

< 1999.8.6 >

64 1

. , .<
[1999.8.6](#) >

63 2() 65 2

가

. < [2008.2.29, 2008.12.31](#) >

1

. < [2008.2.29, 2008.12.31](#) >

[[2007.12.28](#)]

64 ()

. < [1999.8.6](#) >

. .
. < [1999.8.6](#) >

8

65 () 69 3 6 "

. < [2010.5.27](#) >

1. 3

2.

3. 28

4. 44

66 () 69 3

()

. <

[2004.3.17, 2008.2.29, 2010.5.27](#) >

66 2() 69 2 1 1 "

" 「

」 4 1

[[2007.12.28](#)]

67 ()

. 가

68 () 70 2

(" ")

. < 1998.12.31, 2006.6.12,

69 2() 72 3 " 가
가 .

[[2005.6.30](#)]

70 () 75 2 가
7
1 가 가
() .< [2004.3.17](#)>
1 가가 ()
) .< [2004.3.17](#)>

71 () 66

76 1 .

69 70 1 .

72 () 79 2

1 가

79 2

5

1

73 () 79 1 가

1. .

2. .

3. .

4. .

74 <[2007.12.28](#)>

75 <[2007.12.28](#)>

76 ()

. . . (" .

")가 .< 1998.12.31, 1999.8.6, 2007.12.28, 2008.2.29>

77 () 가

78 ()

9

79 () 82 1 2 " "

.< 2002.9.18, 2005.5.7, 2007.12.28, 2008.6.5>

1. . : 2 5

2. : 5

2 2. . : 6

3. (가 2 • 3) : 5

82 1 2 " 가 " 1

.< 2005.5.7>

1. 6

2. 가 6 가

79 2() 83 2 " "

1 .< 2003.8.21, 2005.5.7, 2006.3.29>

1. 13 1 1 .

50

2. 「 」 191 16 1

50

3. 13 1 1 1

가. 「 」 가

.<2006.3.29>

. 「 」 가

가

[2002.9.18]

79 3() 83 2 3 " " 가

가

[[2007.12.28](#)]

80 () 84

6 .

1

2 1

가

, 83 12

.< [2007.12.28, 2008.2.29](#)>

2

가

82 83

.< [2007.12.28](#)>

81 ()

82

.< [2007.12.28,](#)

[2008.2.29](#)>

1

20

가

7

.< [2007.12.28, 2008.2.29](#)>

2

2

.< [2007.12.28, 2008.2.29](#)>

[[1999.8.6](#)]

82 () 85 3 2

"

"

.< [2009.10.1, 2010.11.15](#)>

1.

2. 「 」

3. 「 」

4. 「 」

[[2007.12.28](#)]

82 2() 86 2

"

"

가

가

[[2005.6.30](#)]

83 (가) 87 1 " " . < 1999.8.6, 2001.8.25, 2003.8.21, 2003.11.29, 2005.3.8, 2005.5.7, 2007.12.28, 2010.5.27 >

1. 가 가 (「 가 」 21 . 2) 3

2. 가 가 3 2 2. 2 50 3

3. 「 」 16 1 200 4. 「 」 3

5. 200 (「 」) 가 ((「 」 16)

6. 「 」 200 7. 100 87 2

가 . < 2007.12.28, 2008.2.29 > 1

가 . , 「 」 10 1 . < 2003.8.21, 2005.5.7, 2007.12.28 >

1 1 • 2 • 2 2 • 4 • 5 • 6 7 3 • 5 7 (" ") 가 87 1 가

. < 1998.12.31, 2003.8.21, 2007.12.28, 2010.5.27 > 4 가 . < 2007.12.28 >

가

.< 1998.12.31, 1999.8.6, 2002.9.18, 2007.12.28>

83 2() 87 2 1

.<

2008.2.29>

87 2 2 4 " "

,

87 2 5

.< 2008.2.29>

[2007.12.28]

84 () 88 2

.< 1999.8.6>

() 1

85 () 「 가

」 14 2 27 3 .< 2005.5.7,

2007.12.28>

86 () 91 1

.< 1998.12.31, 1999.8.6,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1.

가. 9

. 9 2

. 17 .

2. 9 (受理)

3. 9 2 .

3 2. 11

4. 17 .

5. 20 2

6. <2007.12.28>

7. <1999.8.6>

8. 81 .

9. 82

10. 83

10 2. 85 3

11. 86

12. 101 .

12 2. 10 11

13. 12 1 .

14. <2008.6.5>

<2007.12.28>

<2007.12.28>

87 () 91 3

2

. <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08.6.5>

1.

가. 9

. 9 2

. 17 .

2. 23 가·

3. 23 2 가·

4. 24 .

5. 48 4 가

6. 49

7. 87 2

8. 39 4

1

.< 2002.9.18, 2005.5.7, 2005.6.30,

2007.12.28, 2008.2.29, 2008.8.26>

1. 「 」 41 1

2.

3. 「 」 .

4. 「 」 32 가

5.

6. 「 」 32 가

7. 「 」 32 가

1 2

.< [2002.9.18, 2008.2.29](#)>

1 1 가 . 1 1 2

가 . 5

.< [2002.9.18, 2008.2.29](#)>

1 2

.< [2002.9.18, 2008.2.29](#)>

[[1999.8.6](#)]

87 2() 13 1 2

2013 12 31 ,

2 16 1 1

2013 12 31 ,

.< [2009.11.10](#)>

80 1 6 1 2011 12 31

.< [2009.11.10](#)>

[[2009.7.7](#)]

11

88 () 93 1 " " 1

.< [2003.11.29](#)>

1. 가

2. 5

3. 16 . , 2 2 .

89 () <2009.11.10>

<2009.11.10>

7 .< 1999.8.6, 2007.12.28, 2008.2.29>

가 . 가 99 100

.< 1999.8.6, 2007.12.28, 2008.2.29>

<2009.11.10>

< 15433 ,1997. 7.10>

1 () . , 61 1998 7 1 , 83

1998 1 1 .

2 () 13

1 2 가 1998 12 31 .

3 () .

1.

2.

4 ()

+-----+-----

-----+

| | |

+-----+-----

-----+

| | |

| | |

| | |

| | |

| 가 (1) |가 (1) |

| 가 (2) |가 (2) |

가

21 1 1 " " " " " "

37 2 4 " , " "

" " " " " " " " " "

3 5 " " " " " " " "

84 1 " " " " " " " "

1. 9 11

35 2 " " " " " " " "

20 21 " " " " " " " "

25 2 2 " " " " " " " "

10 () " " " " " " " "

< 15581 ,1997.12.31 > ()

1 () 1998 1 1 " 21 25 " 1999 1 1

2 5

6 ()

56 1 4 " " " " " " " "

4.

7

< 15598 ,1997.12.31 > ()

1998 1 1 " " " " " " " "

< 16063 ,1998.12.31 >

()

()

(1) (1)

(2) (1)

(3) (2)

(4) (2)

(5) (3)

(2)

< 16512 ,1999. 8. 6 >

1 ()

2 ()

+-----+-----

-----+

| | |

+-----+-----

-----+

|· |· |

|·가 (1) |·가 (1) |

|·가 (2) |·가 (1) |

|·가 (3) |·가 (1) |

|·가 (4) |·가 (2) |

|·가 (5) |·가 (3) |

+-----+-----

-----+

가 (1 3) 13 1 ,

16 1 2

2000 12 31

5

< 17296 ,2001. 7. 7>()

1 () 2001 7 8 .

2 ()

36 2 " . " " . "

3

< 17347 ,2001. 8.25>

() . , 13 1 1 2 1

(가) 가 13 1

1 2 2 3 가 .

() 2 .

2005 12 31 가 .

2004 12 31 .

1. 2001 12 31 : 5

2. 2002 1 1 2002 12 31 : 4

3. 2003 1 1 2003 12 31 : 3 5

4. 2004 1 1 2004 12 31 : 3

(가) 83 1 1 2

() 13 1 1 2 2

6 .

< 17740 ,2002. 9.18>

() .

() 26 2003 1 1

, 2003 12 31 3 .

() 2 6

12 2 7 9 4

()

5

< 18092 ,2003. 8.21 >

- 1 () , 82 2003 9 1
- 2 (가) 83 1
2004 1 1
- 3 () 13
1 6 79 2 1 2003 12 31
- 4 () 51 2
3
2 1
- 5 ()
82 2003 12 31
- 6 ()

· · · ·

·

· ·

·

·

·

· · · ·

·

2

2004 12 31

2003 12 31

(가) 13 1 1 2 2

() 13 1 1 2 2
6

< 18918 ,2005. 6.30 >

() 2005 7 1 . , 21 1 2 , 26 2, 30 2, 34 2,
6 가 12 , 6 1 2 7 3 3 2006 1 1 ,
33 1 • 2 6 7 2008 1 1 .
() 21 1 2

< 19139 ,2005.11.25 >

. , 36 37 2006 2 9 , 13 1 4
2006 5 9 .

< 19422 ,2006. 3.29 > ()

1 () 2006 4 1 .
2 ()
79 2 3 가 " 「 」 " " 「
」 " , .
<26>

< 19513 ,2006. 6.12 > ()

1 () 2006 7 1 .
2 3
4 ()
3 1 " 1 " "
" , 2 " 2 • 3 " "
3 () "

68 1 1 2 "2 3 " "3
 " , 2 1 "3 4 " "3 , 4
 " , 2 "4 " "4
 "
 <241>

< 20488 ,2007.12.28>

- 1 () 2008 1 1 . , 25 1 18 2008 1 28 , 2(1 2 1)
 2009 1 1 .
- 2 () 21 1 2
 () .
- 3 () 25 1 18 2008 1 28 .
- 4 () 26 2 .
- 5 () 30 2 4 .
- 6 () 36 1 2 5
 「 」 8 가 9 「 」 16
 (「 」 28 가)
- 7 (가) 83 1 .
1. 「 」 8 가 9
 2. 「 」 16 (「 」 28 가)
)
3. ()
- 8 () 1
 () .
- 9 () 2 .
- 10 () 8477 3 "
 " 1

11 ()

52 1 3 5

12 () 1

13 () 2

() 2008 12 31 (

) , 가

2 1

• , 1 2 2 (

1 2 1)

14 ()

4

15 ()

5

16 () (

)

< 20506 ,2007.12.31 >(

)

< 20722 ,2008. 2.29 >()

1 () , 6

2 5

6 ()

2 1 • 3 1 2 , 9 , 10 , 11 , 12 1 , 12 2

2 3 , 13 1 1 2 • 2 • 2

, 16 1 , 25 2 , 26 2 1 , 26 3 1 2 , 27

, 31 2 , 34 3 , 34 2 3 1 , 34 3 2 , 39 2 4 ,

40 , 41 1 , 45 1 , 48 , 51 2 3 6 ,

57 4 , 62 2 , 63 2 1 2 , 80 2 , 81 1 • 2
 4 , 83 2 , 83 2 1 3 , 86 1 , 87 1
 6 • 2 • 4 • 6 • 7 • 3 5
 89 2 • 3 • 4 , 1 1 • • 6 1 "

" " " .
 11 , 12 2 2 , 18 , 30 2 4 , 32 1 , 34 2 3 •
 4 , 35 5 , 45 2 , 66 89 5 " " "

" .
 68 1 2 " • " " • " , 2 2 "

• " " • " .
 76 2 " " "

" .
 3 1 " " " , 2 " • •
 • • • • " " • •
 • • • • " .
 51 2 2 " " " " .

<138>

< 20791 ,2008. 5.26> ()

- 1 () .
- 2 3
- 4 ()

38 2 2 " " " " .
 <18>

< 20805 ,2008. 6. 5>

- 1 () . , 86 1 14 87 1 8
- 2008 9 22 , 2 2008 6 8 .
- 2 () 2 3
 가 .
- 3 () ()

< 20947 ,2008. 7.29>()

1 () 2009 2 4 . < >

2 25

26 ()

56 2 4 " 「 」 " " 「 「 」

<113>

27 28

< 20977 ,2008. 8.26>()

1 () 2008 8 28 .

2 3

4 ()

87 2 1 " 「 」 82 1 " " 「 「 」 41 1 " 「 」

5

< 21098 ,2008.10.29>()

1 () . < >

2 3

4 ()

37 3 " 「 「 」 8 " " 「 「 」 11 " 「 」

<38>

< 21214 ,2008.12.31>()

1 () . < >

2 4

5 () <149>

<150>

63 2 1 2 " " " " .
2 1 " " " " ,
" " " " " " " .

<151> <175>

< 21233 ,2008.12.31>

1 () 6 . , 25 1

2 () 35 3 5 ()

< 21626 ,2009. 7. 7>(

)

< 21765 ,2009.10. 1>

1 ()

2 3

4 ()

58 1 82 4 " " " " .

<31>

5

< 21819 ,2009.11.10>

3

< 22173 ,2010. 5.27>

1 () 2010 6 30 . , 57 1

, 83 1 2010 9 30 .

2 () 83 1 1 83 1
()
3 () ()

< 22269 ,2010. 7.12 >

1 () . < >
2 ()

6 가 14 " " " " .
<136 >

< 22303 ,2010. 7.26 >

1 () 3 . < >
2 8
9 () .
34 2 3 1 " 「 」 15 7 " " 「
」 15 6 " .

< 22493 ,2010.11.15 >

1 () 2010 11 18 .
2 3
4 ()

82 2 " " " " .
<115 >

5

[별표 1] <개정 2009.11.10>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 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 철·공항·관개수로·발전 (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 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 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과 기둥(또는 벽)이 있 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 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 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4. 산업·환경설 비 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 산시설, 환경오염을 제 거·감축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 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 리설비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에 따라 수목원·공원·녹 지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	수목원·공원·숲 등의 조 성공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실내건축공 사업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 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 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 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

		<p>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p> <p>·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p> <p>28. 난방시공업 (제3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p> <p>29.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	--	---	--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의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목공

사업 또는 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본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3. 건설업자는 해당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
4.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
5.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할 수 있다.
6. 난방시공업 제1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7. 난방시공업 제2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8.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p>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p> <p>·목재창호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p> <p>·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p> <p>·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뽐칠하여 마감하는 공사</p> <p>·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p> <p>·방수공사: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p> <p>·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p>	<p>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p> <p>·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p> <p>·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p> <p>·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미장뽐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뽐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p> <p>·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및 테라코타타일공사 등</p> <p>·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p> <p>·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p>
2. 토공사업			
3.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4.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5.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뿔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6.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7.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천정·건식벽체·강재벽체·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p>설치하는 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p>·온실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p> <p>·지붕·판금공사: 기와·슬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싱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p> <p>·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p>	<p>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호울타리·웬스·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음벽·방음터널·교량안전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p> <p>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도어·사다리·철재프레임·난간·계단 등의 공사</p> <p>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p> <p>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p> <p>샌드위치판넬·ALC판넬·PC판넬·세라믹판넬·알루미늄 복합판넬·사이딩판넬·클린복합판넬·시멘트보드판넬·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p> <p>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p>
8.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p>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p>	

10. 기계설비 공사업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 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 하는 공사	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 는 공사 등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 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 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 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 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 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 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 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 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 공사, 지열냉·난방 기기 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 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 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 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 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 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11.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 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 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 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 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 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 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

	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공사를 제외한다)및 세척·갱생공사 등
12.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13. 철도·궤도공사업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 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14.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15. 수중공사업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
16.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뽑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

			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17.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18. 강구조물 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19. 철강재설치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설치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설치공사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20. 삭도설치공사업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21. 준설공사 업	하천·항만 등의 물밀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22. 승강기설 치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23. 가스시설 시공업(제1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24. 가스시설 시공업(제2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p>그 부대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p>25. 가스시설 시공업(제3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아래의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p>26. 난방시공업(제1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축열식 전기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p>27. 난방시공업(제2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 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 	

[별표 2] <개정 2008.12.31>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관련)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 용자산평가액)		시설·장비
		법인	개인	
토목 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 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 인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4억원 이상	
건축 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 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 인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0억원 이상	
토목 건축 공사업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 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11명 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 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 술자 5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 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 술자 5인 이상	법인	1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4억원 이상	
산업· 환경 설비 공사업	기계·금속·화학 및 세라믹·전기· 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 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 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 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법인	1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4억원 이상	

				망치·체인 다. 초음파에 의 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 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 리트전기저항측 정장치(resistiv ity), 전위차측 장치(half cell p otential) 5. 사무실
--	--	--	--	--

비 고

1. 기술능력

- 가.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를 제외한다.
- 나.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같음할 수 있다.
- 다.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라.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같음할 수 있다.
- 마. 삭제 <2007.12.28>
- 바. 삭제 <2007.12.28>
- 사.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에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는 응용지질기술자로 같음할 수 있다.
- 아. 난방시공업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은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

상 종사한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자. 난방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 중 가스용보일러(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분야 기술자 1인 이상과 기밀시험설비·자기압력기록계·가스누출검지기를 갖추어야 한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가.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다. 실내건축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하는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3. 시설장비

가. 위 표의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자기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나. 위 표 중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 중 제작장·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

라. 삭제 <2008.6.5>

마. 난방시공업(제3종)의 등록기준 중 장비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바. 위 표 중 사무실은 「건축법」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12인 이상			
조 경 공 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국토 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4억원 이상	
실 내 건 축 공 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토 공 사 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미 장 · 방 수 · 조 적 공 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석 공 사 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도 장 공 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비 계 · 구조물 해 체 공 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화학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철근·콘크리트공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기계설비공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상·하수도설비공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보링·그라우팅공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철도·궤도공사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1. 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적재하 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
		개인	6억원 이상	

				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6. 사무실
포 장 공 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 상	법인	3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6억원 이상	
수중공 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 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 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가. 잠수헬멧 (KMB 또는 S u p e 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수중 통화기 라. 생명줄 일 체 (저 압공 기호스, 수 심 계 호 스, 통화용 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 비 5세트 이 상 3. 사무실
조 경 식 재 공 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특자 중 2인 이상			
조경 시설물 설치 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 특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강구조 물공사 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중 2인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사무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특자 2인 이 상	개인	6억원 이상	
철강재 설치 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 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 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 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 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 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법인	10억원 이상	1. 제작장(건축물 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 상) 2. 현도장(길이 5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 상)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 (30KVA 이상) 5. 사무실
		개인	20억원 이상	
삭도 설치 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 토목·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특자 2인 이 상	법인	3억원 이상	1. 기중기(50톤) 2. 전기용접기 (30KVA 이상) 3. 동력원차 4. 발전기 5. 사무실
		개인	6억원 이상	

준 설 공 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 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법인	10억원 이상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 그레브식(6세제곱미터 이상) 다. 덧파식(5세제곱미터 이상) 라. 바켓식(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3. 양카바지(100마력 이상) 4. 사무실
		개인	20억원 이상	
승강기 설 치 공 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가 스 시 설 시 공 업 제 1 종	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메타 7. 절연저항측정

	<p>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p> <p>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p>			<p>기(500V 1천 MΩ)그 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p> <p>8. 각종 압력계</p> <p>9. 표준이 되는 온도계</p> <p>10. 사무실</p>
<p>가 스 시 설 시 공 업 제 2 종</p>	<p>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p> <p>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 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p> <p>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p> <p>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p>			<p>1. 기밀시험설비</p> <p>2. 자기압력기록계</p> <p>3. 가스누출검지기</p> <p>4. 사무실</p>
<p>가 스 시 설 시 공 업 제 3 종</p>	<p>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p> <p>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p>			<p>1. 기밀시험설비</p> <p>2. 자기압력기록계</p> <p>3. 가스누출검지기</p>

	<p>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p> <p>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p> <p>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p> <p>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자</p> <p>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p> <p>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p>			<p>기</p> <p>4. 사무실</p>
난 방 시 공 업 제 1 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2명 이상			<p>1. 수압시험기 1대 이상</p> <p>2. 사무실</p>
난 방 시 공 업 제 2 종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 중 1인 이상			<p>1. 수압시험기 1대 이상</p> <p>2. 사무실</p>
난 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			<p>1. 가스분석기 1</p>

[별표 3] 삭제 <1999.8.6>

시 공 업 제 3 종	사·열관리기사·금속기사·기계분야 기사·기계분야 기능장 또는 금속 분야 기능장 이상의 기술자 중 1인 이상			대 이상 2. 광고온계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4. 온도측정범위 가 300℃ 이하 인 표면온도측 정기 1대이상 5. 버니어캘리퍼 스 및 마이크로메 타 1식 이상 6. 압축강도시험 기 1대 이상 7. 한국산업규격 에 규정된 내화 도 시험에 적합 한 내화도측정 기 1대 이상 8. 사무실
시설물 유 지 관 리 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4 인 이상	법인 및 개인	3억원 이상	1. 육안검사 : 돋 보기·망원경·카 메라·비디오카메 라 및 균열폭측 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측 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별표 4] <개정 2007.12.28>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2년
2. 터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3. 철도	①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4. 공항·삭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5. 항만·사방간척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6.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년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2년
7. 댐	①본체 및 여수로 부분	10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8. 상·하수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관로 매설·기기설치	3년
9. 관계수로·매립		3년
10. 부지정지		2년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12.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년
	③①·② 외의 시설	3년
13. 기타 토목공사		1년
14. 건축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	10년

15. 전문공사	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③건축물 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①실내의장	1년
	②토 공	2년
	③미장·타일	1년
	④방 수	3년
	⑤도 장	1년
	⑥석공사·조적	2년
	⑦창호설치	1년
	⑧지 붐	3년
	⑨판 금	1년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년
	⑫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년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⑭보일러 설치	1년
	⑮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⑯ 아스팔트 포장	2년
⑰보 링	1년	
⑱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년	
⑲온실설치	2년	

비 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 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별표 5] <개정 2008.12.31>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법 제9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p>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p> <p>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p> <p>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p>
30억원 미만	<p>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p> <p>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p> <p>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p>

비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란 「국가기술훈자격법」 제2조제3호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검측·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5.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에 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에 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관련)

가. 법 제82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액

위 반 행 위	해당법 조문	1차		2차		3차 이상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지기 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 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이 책임질 사유로 국 토해양부령으로 정하 는 규모 이상의 하자 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로서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발생한 하자 가 1회 이상 포함되는 때	법 제82조제1 항제1호	4개월	800만원	4개월	800만원	4개월	800만원
2.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이 책임질 사유로 국 토해양부령으로 정하 는 규모 이상의 하자 가 3회 이상 발생한 때	법 제82조제1 항제1호	3개월	600만원	3개월	600만원	3개월	600만원
3.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의 건 설공사실적의 연평균 액이 제79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한 때, 다만, 제79조제2 항 각 호에 해당되는 때는 제외한다.	법 제82조제1 항제2호	1개월	200만원	1개월	200만원	1개월	200만원
4. 법 제21조의2를 위반하 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 에게 빌리거나 빌려준 때	법 제82조제1 항제2호의2	2개월	400만원	3개월	600만원	3개월	600만원
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실적, 기	법 제82조제1	4개월		4개월		4개월	

슬자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때	향제2호의3						
6.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허위로 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3호	3개월	600만원	4개월	800만원	4개월	800만원
7.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2호의2제4호 및 제6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4호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3호·제6호·제8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개월	400만원	3개월	600만원	3개월	600만원
나. 가목 외의 경우		2개월	400만원	2개월	400만원	2개월	400만원
8.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가목	1개월	200만원	1개월	200만원	1개월	200만원
9.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나목	1개월	200만원	1개월	200만원	1개월	200만원
10.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다목	2개월	400만원	3개월	600만원	3개월	600만원
11.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라목	2개월	400만원	3개월	600만원	3개월	600만원
12.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검사, 기타 의무를 위	법 제82조제1항제5호	1개월	200만원	1개월	200만원	1개월	200만원

반한 때	다목·라목						
13.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 마목	2개월	400만원	2개월	400만원	2개월	400만원
1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82조제1항제6호						
가. 10명 이상 사망한 때		5개월	1억원	5개월	1억원	5개월	1억원
나.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때		3개월	800만원	3개월	800만원	3개월	800만원
다.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때		2개월	600만원	2개월	600만원	2개월	600만원
1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	1년	5억원	1년	5억원	1년	5억원
1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거나 일반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	8개월	3억원	8개월	3억원	8개월	3억원
17. 고의 또는 과실로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킨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	6개월	2억원	6개월	2억원	6개월	2억원
18.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	4개월	1억원	4개월	1억원	4개월	1억원
19.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	2개월	5천만원	2개월	5천만원	2개월	5천만원

비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법 제8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 반 행 위	해 당 법 조 문	영 업 정 지 기 간	과 징 금 의 비 율 (%)			
			5 천 만 원 까 지	1 억 원	5 억 원	30 억 원 이 상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법 제82조 제2항제1호	8월	30	24	16	8
1의2.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1호의2	6월	24	18	12	6
2.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2호	8월	30	24	16	8
3.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2호	6월	24	18	12	6
4.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2호	6월	24	18	12	6
5.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2호	4월	16	12	8	4
6. 재하도급금지규정에 위반하였으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2호	4월	16	12	8	4
7.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법 제82조	2월	8	6	4	2

위반한 때	제2항제3호					
7. 삭제 <2005.6.30>						
8.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법 제82조제2항제4호	6월	24	18	12	6

비 고

1.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구역사이의 도급금액 등 해당과징금의 비율은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의한다.
2.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각 구역사이의 과징금이 당해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한다.

다. 법 제83조의 규정 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영업정지기간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83조제2호	6월
2.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법 제83조제8호	6월
3.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작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법 제83조제9호	1년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법 제83조제10호	6월
5.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로서 그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법 제83조제12호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때		8월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6월

때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		4월 2월
--	--	--------------

비 고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수액이 위 표 중 제5호 라목의 위반행위
란에 해당되는 때로서 최근 5년간 건설업자가 법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
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경고할 수 있다.
2. 위 표 중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 가.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
우
 - 나.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건설업
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으로부터 제5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시나 동의(묵인하거나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두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
은 경우
 - 다.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
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행하는 제5호의 위반행위에 대하
여 주의감독의무를 해태한 경우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6의2. 삭제 <2010.5.27>		
7.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히 한 자	법 제100조제3호	30만원
8. 법 제81조제6호의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100조제4호	50만원

[별표 7] <개정 2010.5.27>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제89조제3항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의 금 액
1.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법 제99조제2호	150만원
2.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2호 및 제14호 중 일부를 명시하지 아니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	법 제99조제2호	50만원
3. 삭제 <2010.5.27>		
3의2. 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통보한 자	법 제99조제3호 의2	100만원
3의3. 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9조제4호	150만원
4.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9조제5호	150만원
4의2.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한다)	법 제99조제6호	150만원
4의3.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에 한정한다)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99조제7호	300만원
4의4.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81조제5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99조제7호 의2	300만원
5.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법 제99조제8호	150만원
5의2. 법 제81조제4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99조제9호	100만원
5의3.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기한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0조제1호	50만원
6.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법 제100조제2호	30만원